

과업내용서

사 업 명	2024년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등 기능개선
주관기관	국립재활원

2024년 7월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공공재활의료지원과	공무직/임성은	02-901-1955	lse1983@korea.kr

목 차

I. 사업개요.....	3
II. 시스템 현황	6
III. 사업추진 방안.....	9
IV. 과업지시사항.....	12
V. 기타사항.....	33
VI. 별첨.....	37
VII. 서식.....	41

I . 사업 개요

1. 과업개요

- ☐ 사업명: 2024년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등 기능개선
-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소요예산: 금19,500,000원(금일천구백오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 계약방법: 경쟁입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최신 개정 사항(2024.1.1.시행) 반영을 통한 신뢰도 높은 양질의 보조기기 정보 제공
- ☐ 해외 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공, 국내 공적 급여 페이지 연계 등 보조기기 정보 이용자 편의성 향상
- ☐ 관리자 페이지 기능 수정 등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3. 과업 내용

- ☐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기능 개선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IV. 과업지시사항' 참조

- ☐ 홈페이지
 - 품목고시 통합 변경 기능 신설 및 신규 품목고시 이미지 제작, 데이터베이스 변경
 - 해외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 메뉴 추가
 - 공적급여 사업 안내 페이지 내 연계 기능 추가
 - 활동별 보조기기 검색 페이지 제작
 - 전시장 VR체험 연혁 보기 기능 추가

☐ (제품정보 등록 시스템) 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 내 제품 정보 입력 양식 개편
(텍스트→동영상 및 매뉴얼 업로드 등)

☐ (관리자 페이지) 미인증 제품관리 페이지 내 정부지원사업 항목 데이터 표출

☐ 취약점 점검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에서 실시하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이행 점검에 따른
취약점 및 보안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수행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이행

☐ 기타

○ 홈페이지 등 시스템 오류 사항(pdf업로드 시 오류 등)에 대한 대응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시스템명 :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 사용자 : 전 국민

2. 현행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구 분	규격/모델	비고
웹서버	- 개발언어 : PHP - WEB : Apache 2.4 - OS : Windows Server 2019	
DB서버	- DBMS : MySql 5.8 - OS : Windows Server 2016	
백업솔루션	- SW : Commvault 11(컴볼트사) - Type Library : Quantum Scalar i3	

□ 현행 시스템 구성도

○ 홈페이지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 홈페이지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 홈페이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홈페이지 기능 개선

- 최신 법령 개정 사항(보조기기 품목 고시) 반영
- 각종 연계 기능(해외 보조기기 페이지, 공적급여 안내 페이지 등) 개발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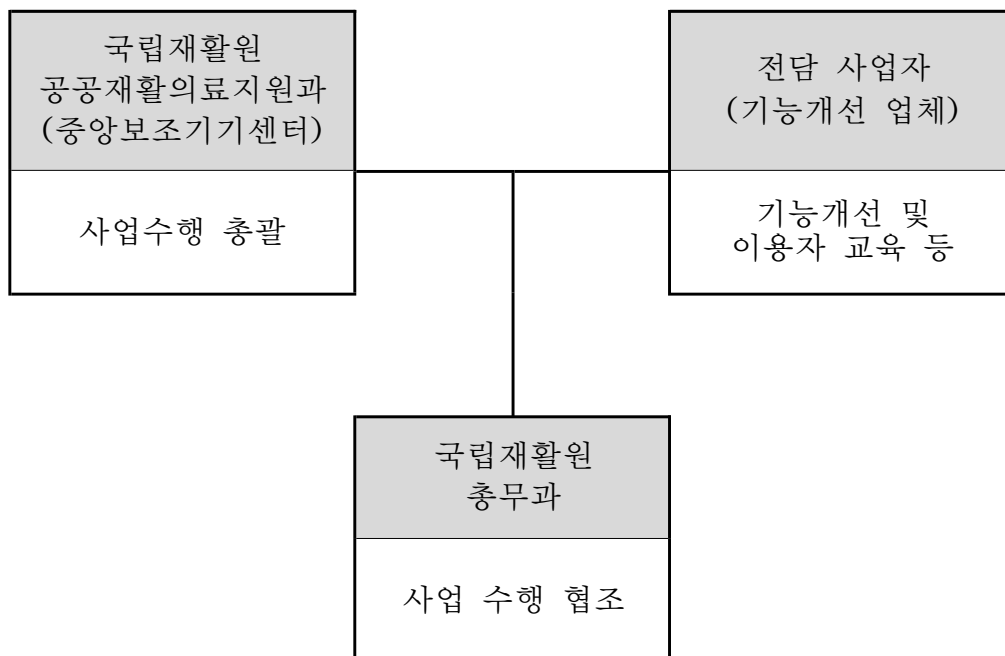
☐ 제품정보 등록 시스템 및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 제품 정보 입력 양식 개선
- 관리자 페이지 확인 항목 개선

☐ 각종 점검 사항에 따른 조치 및 품질관리 사항 준수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 추진 주체별 역할

부 서 명	주요 업무 내용
공공재활의료지원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검수, 기타 사업 수행 및 운영 지원 등
총무과 (용도계)	○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총무과 (전산실)	○ 사업자의 작업공간 마련, 서버 접속권한 제공 ○ 보안 관련 교육 등
사업자	○ 사업관리, 위험관리, 인력관리 등 정보화 사업 및 업무 지원 ○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 정기(주간) 및 비정기 보고 ○ 시스템 개발 및 검수 후 결함 사항 개선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내용 \ 일정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준비	사업계획수립										
	사전검토 및 과업심의										
	사업자 선정/계약										
사업 수행	업무환경 구성 및 준비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요구사항 개발										
	요구사항 반영 및 최종 확인										
	산출물 검토 및 검수										

4. 추진방안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계약 체결
- 세부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결정

IV. 과업지시사항

1. 과업지시 개요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최신 개정 사항(2024.1.1.시행) 반영

□ 해외 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공, 국내 공적 급여 페이지 연계, 관리자 페이지 기능 수정 등

2. 용어의 정의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수량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시간이나 처리량 또는 자원의 최대 사용치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SW/N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 환경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go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결 조건이나 특성 및 규약 등에 대한 요건을 기술	3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존 및 관리,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구축 시스템이 계획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 단계에서 수행하려 하는 테스트의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방법 및 절차, 환경 등에 대해 기술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이 사용하거나 또는 생성하는 데이터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기밀성, 무결성 관점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제약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유지보수성, 효율성, 신뢰성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 요구사항을 기술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특성 및 범위, 해당 기관별 운영 환경을 고려한 추가적인 필요사항, 관련 법·제도 준수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약적인 사항을 기술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조직, 사업관리 방법론, 공정관리, 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기타 작업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합계		40

3.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품목고시 현행화
	SFR-002	해외 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 메뉴 추가
	SFR-003	공적급여 사업 안내 페이지 내 연계 기능 추가
	SFR-004	활동별 보조기기 검색 페이지 제작
	SFR-005	전시체험장 VR체험 연혁 보기 기능 추가
	SFR-006	제품정보 등록 시스템 정보 입력 양식 개편
	SFR-007	제품관리 페이지 내 정부지원사업 항목 데이터 표출
	SFR-008	접근성 확보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오류 응답 처리
	PER-002	시스템 자원 사용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OR)	ECR-001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INR-002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INR-003	인터페이스 설계 최적화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003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관리 및 산출물 최신화
	DAR-004	보조기기 품목고시 변경
	DAR-005	데이터표준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6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7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8	데이터 값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부하 등 통합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개인정보 처리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5	물리적 보안
	SER-006	기술적 보안
	SER-007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8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가용성 및 운용성
	QUR-002	시스템 하자 보수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규정 준수사항
	COR-002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사항
	COR-003	웹접근성 준수사항
	COR-004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 준수사항
	COR-00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위험관리방안
	PMR-002	사업완료의 검사 및 검수 관련 사항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3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4	중앙보조기기센터 앱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5	기타 사항

4. 상세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품목고시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필요 기능 상세화
	세부 내용	○ 품목 고시 신규품목 추가 ○ 기존 품목고시 변경(명칭, 고시번호 등) ○ 기존 품목고시 삭제 ○ 신규 품목고시 이미지 제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해외 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 메뉴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외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 메뉴 추가
	세부 내용	○ 해외 보조기기 DB 홈페이지 바로가기 페이지 신설 - 보조기기 제품정보 DB와 유사한 형태의 해외 보조기기 DB 홈페이지(호주,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일본 등) 연결 링크 페이지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공적급여 사업 안내 페이지 내 연계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적급여 사업 안내 페이지 내 연계 기능 추가
	세부 내용	○ 기 구축된 공적급여 사업 안내 페이지 내 사업 운영 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활동별 보조기기 검색 페이지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활동별 보조기기 검색 페이지 제작
	세부 내용	○ 기존 ‘내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 페이지를 전면 수정하여 이동, 식사, 운전, 듣기 및 말하기 등 활동별 보조기기 검색 페이지 제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전시체험장 VR체험 연혁 보기 기능 추가
요구사항	정의	전시체험장 VR체험 연혁 보기 기능 추가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전시체험장 VR체험 페이지 내부 2019년도 버전 VR체험 페이지 보기 기능 제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제품정보 등록 시스템 정보 입력 양식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품정보 등록 시스템 정보 입력 양식 개편
	세부 내용	○ 보조기기 제품정보 등록 시스템 내부 제품정보 입력 양식 수정 - 사용 방법 : (기존) 텍스트 → (변경) 동영상 및 매뉴얼 업로드 - 정부지원사업/정부지원사업에 등록된 제품 : (기존)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 (변경)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제품관리 페이지 내 정부지원사업 항목 데이터 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품관리 페이지 내 정부지원사업 항목 데이터 표출
	세부 내용	○ 관리자 페이지 > 제품등록시스템 > 제품관리 페이지 > 미인증 제품관리, 등록된 제품관리 페이지 내부 표에 정부지원사업 항목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근성 확보
	세부내용	○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②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 효율화
	세부 내용	○ 기존 인프라 및 SW에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현 ○ 기존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의 평균 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간 암호화, 본인 인증 등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안정성 및 성능 보장

③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환경 구성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UI/UX 화면 제공
	세부 내용	○ 최신 트렌드에 맞춘 사용자 중심의 UI/UX 화면 제공 ○ 다양한 접속을 고려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디자인 설계(텍스트, CSS 스타일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 안내 기능을 구축해야 함 ○ 정보와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22.5.12.)에 따른 기능 개발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설계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설계 최적화
	세부 내용	다양한 버전에서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설계 및 최적화

⑤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 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1.10.2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3.4.3.)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호, '24.1.16.)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가이드」	별첨 참고자료 참조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세부관리 가이드 5종」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4615, '20.7.1.)				
○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산출정보		해당 DB 품질진단(표준,구조,값)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을 참조하여 필수항목 누락이 없도록 정의 - 표준용어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용어의 경우 DB표준용어 정의서에 추가 작성 -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code.go.kr) 및 보건복지부 표준 코드를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의 경우 정의서에 작성 - 표준도메인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도메인을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및 산출물 최신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및 산출물 최신화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보건복지부 데이터 구조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작성해야 함. 구축단계에서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산출물을 변경해야 함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개체), 애트리뷰트(속성) - (다이어그램) 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또는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현행화 지원) (기관메타관리시스템 : 10.175.82.31/gdp) - 발주기관이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관리 산출물 (정의서, 다이어그램,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보조기기 품목고시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조기기 품목고시 변경
	세부 내용	○ 신규 품목고시 데이터 추가 ○ 기존 품목고시 데이터 수정 및 삭제
산출정보		DB정의서, DB관계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 · 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 · 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를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 · 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⑥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부하 등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하 등 통합테스트
	세부 내용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항 충족여부 검증 ○개발·구현한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기능 수행 후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본 사업에서 개발·구현한 기능 등으로 인해 운영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 대응방안 마련 및 개선방안 포함 ○본 사업에서 구현한 기능의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를 실시

⑦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보건복지부, '20.10.5.)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보건복지부훈령 제195호, '22.5.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04.)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딩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보건복지부 사이버보안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

		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과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1. 계획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자료·장비·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시 이를 반영함 2. 사업 계약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됨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사업수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신상 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과업지시서와 계약서(입찰공고 포함)에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 조치를 준수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관련 사항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임의 유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3. 사업 수행 시 ○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자는 사업관리자(PM)에게 용역 업체 보안 책임자의 역할을 부여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누출’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인력은 우리 원의 승인 없이 무단 교체하여서는 안되며,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은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업수행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해당여부 확인 등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자료 보안 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함
다만, 파일서버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 부서장이 지정한 PC에서 저장 및 관리
- 사업 수행 중 제공받은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며 매일 퇴근 시 반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도, IP현황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철저 준수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목적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
-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및 파쇄 처리하여야 함
- 발주 부서에서 용역업체에 제공된 자료 및 작업용 자료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등록, 절차에 따라 보안조치 후 인수인계되어야 함

※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 서식

순번	제공 자료	용역업체		제공 일자	회수 일자	결재	
		보안관리 책임자	제공자료접근 (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외주 용역업체 인력의 내부 상주는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함
 - 외주 인력의 내부 상주 시, 사업 부서장은 외주직원의 인력 관리 및 시설물 관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용역업체의 노트북 및 PC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선행하여야 함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함.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 유출에 대비한 사업 부서장의 보안조치 후 반출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의 PC, 노트북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함
- 계약 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료 유출 방지 등을 위한 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
- 계약 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윈도우 로그인·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과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함

○네트워크 보안 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함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해서는 아니 됨.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4. 사업 완료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 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함 ○용역업체가 제공받은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반납해야 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의 보관을 금함 ○용역사업 관련하여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한 후 사업수행자의 대표는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5. 기타 ○보안 관련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20.10.5.)을 따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확보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업무 관련 문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 관리 ○국립재활원 인트라넷(행정망)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인터넷망과 분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PC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 유지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정의	외주용역사업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

상세설명	세부 내용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분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 사항 별도 기록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등 ○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⑧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및 운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및 운영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에서 구현한 모든 기능은 운영시스템에서 정상상태로 매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관련 콘텐츠에 대한 변경 요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구현되어야 하며, 상호 운용성 및 이식성을 고려해야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 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보수
	세부 내용	○ 하자보수 기간 등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후 12개월 - 개발시스템의 납품(설치)일이 아닌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 ○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사업종료 1개월간 안정화 지원 - 사업수행시 응용프로그램 개발자가 지원하여야 하며, 시스템 완성도 평가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 기간동안 사업자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장애발생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내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상시 이행

⑨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규정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공통규정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공사 정보화업무요령, 정보보안요령 및 대외기관의 지침/가이드를 준수하여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3-27호, 2023.4.13.)」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국가정보원) - 전자정부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3.5.8.)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34호, '23.1.28.)」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04.)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전자정부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관리 표준가이드 준수 ○ 웹 스타일 가이드 준수 ○ 개발 표준정의서 준수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 2024.4.12.)」의 준수하여야 함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dge, Firefox, Whale,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Edge 브라우저 현행화 필수(IE는 '22.6.15일 서비스 종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2-23호), 공공 웹사이트 UI/UX 점검 기준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2022.12.28일 개정)” 준수. 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W3C의 웹 개발 표준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따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 준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동의 관리 운영 기능 구현 - 개인정보 파기 관련 법규 준수하도록 기능 구현 -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관리 조치 기능 구현 등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기구축된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활용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등 ○ 통계 추출기능 구현 시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과 연동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계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정보화사업 진행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 완료시 보안약점 진단결과를 SW보안약점진단원 자격 보유 제3자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61호, 2022.10.31.)“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확인 후 조치, 공사 내규에 따른 시큐어 코딩 수행 후 점검 결과 제출(국정원 인증 득한 소프트웨어로 점검해 웹취약점, 시큐어코딩 자료 제출 필요) - 개발보안의 범위는 신규 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및 과제의 설계 산출물이며, 유지보수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로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함 -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보안대책 가이드를 준수 하여야 함 - 웹 취약점 점검을 포함하여 점검 후 취약점 노출 시 점검 항목을 100% 조치해야 함 - 신규·변경되는 페이지의 URL에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로그인,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통신 시 암호화 적용

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의 검사 및 검수 관련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의 검사 및 검수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설치와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⑪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포함 ○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을 권고 ○ 유지보수 기간 중 S/W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시스템 운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 실시 ○ 하자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 내역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발주기관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완료 보고서 제출 ○ 하자보수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하자보수는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처리, 장애예방 및 발주기관에서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하자보수 지원을 위해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여야 함. ○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기술 지원부서 및 전문 지원인력의 구성 - 장애 대응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관리자 및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 ○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에서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중앙보조기기센터 앱(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앱)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시스템과 구축·운영 DB 정보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공적급여 보조기기 정보, 보조기기 품목고시, 제품정보 등)는 중앙보조기기센터 앱과 연계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사항에 관한 명시
	세부 내용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V. 기타사항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체결 방식

- “경쟁입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2.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누출 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해당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당업체로 등록하며, 사업자는 발생한 손해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450호, 2022. 11. 28.]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 3항.
11. 그 밖에 국립재활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사전 실시한 사업임

VI. 별첨

별첨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2024년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등 기능개선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투입공수 기반 개발기간 산정표	최소한의 작업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로 산정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 기간 산정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라 ‘ 1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이 산정할 수 있음 ’ 을 준용	3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서비스 분석 및 설계 : 0.5개월 - SW 개발 및 구현 : 1.5개월 - SW 검증 및 보완 : 1개월	3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없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없음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위 ①~④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사업 기간은 3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적정 사업기간
		3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4 년 4 월 16 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4년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등 기능개선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4 년 6 월 ~ 2024 년 11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50,000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4. 사업의 필요성· 공 공 성 검토 (복 수 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법령 :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보조기기법시행규칙」)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민간의 특정 업체에서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함)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5. 종합의견			

별첨 3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4년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등 기능개선
작성일	2024. 4. 16.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VIII. 서식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과업내용 변경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변경요청 사유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변경 영향평가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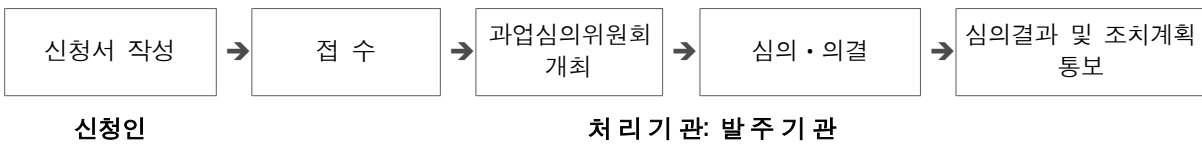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원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원 간에 “2024년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등 기능개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원에서는 위의 공사·기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이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 무 관 (인)

계 약 담 당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재활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재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립재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재활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국립재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재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재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대표:

(인)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무관 귀하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을 인정하고 제 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이
아
부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서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명	(서명)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
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분서
-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외비
-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재활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 2024. 1. 4.]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 업무시스템 운영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¹⁾

1. 회원 및 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 사업 종료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²⁾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립재활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재활원의 용역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금번 사업 “0000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국립재활원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국립재활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국립재활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국립재활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국립재활원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국립재활원에서 제공받은 국립재활원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국립재활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국립재활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국립재활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_____ (서명)

국립재활원장 귀하

별첨 1

기술적용계획표

[O]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등 기능개선
작성일	2024. 4. 1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국가정보원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구분	항 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0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22.12.28.)	0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0				
외부 접근 장치	○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0				
	- XHTML 1.0				0	
	- XML 1.0, XSL 1.0				0	
	- ECMAScript 3rd				0	
	○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0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0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0				
	IPv6				0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0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0	
	- UDDI v3				0	
	- RESTful				0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0	
	- ebXML/BPEL 2.0/XPDL 2.0				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0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0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0	
	o 부가통신: VoIP					
	- H.323				0	
	- SIP				0	
	- Megaco(H.248)				0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0	
	- UNIX				0	
	- Windows Server	0				
	- Linux				0	
	o 모바일용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android				0	
	- IOS				0	
	- Windows Phone				0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0				
	- ORDBMS	0				
	- OODBMS				0	
	- MMDBMS				0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0	Microsoft Visual Studio 플랫폼 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진 개발사 자체 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0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0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0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0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0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0				
	o 동적표현					
	- JSP 2.1	0				
	- ASP.net				0	
	- PHP	0				
	- 기타 ()				0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0				
	- C++				0	
	- Java	0				
	- C#	0				
	- 기타 ()	0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0	
	- SOAP 1.2				0	
	o 문자셋					
	- EUC-KR				0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0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0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0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0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0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0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0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0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0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0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0				
	- 메일 암호화 제품				0	
	- 구간 암호화 제품	0				
	- 하드웨어 보안 토큰				0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0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0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0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0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0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0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0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0				
	- 인터넷 전화 보안				0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 무선침입방지				0	
	- 무선랜 인증				0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0				
	- 네트워크 접근통제	0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0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0				
	- 패치관리	0				
	- 스팸메일 차단				0	
	- 서버 접근통제	0				
	- DB접근 통제	0				
	- 스마트카드				0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0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0				
	- 스마트폰 보안관리	0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0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 듈 탑재 필수)				0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0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0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0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0	
	- 망간 자료전송				0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0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0	
	- 가상화관리제품				0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0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0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0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0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0	
	- 암호지원				0	
	- 정보 흐름 통제				0	
	- 보안 관리				0	
	- 자체 시험				0	
	- 접근 통제				0	
	- 전송데이터 보호				0	
	- 감사 기록				0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0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0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0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0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0	

□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수조건

개인정보 보호 특약사항

- ① 사업자 및 참여인원 전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 ② 사업수행 시 발주처의 관리·감독 및 교육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 ③ 발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 중 업무 연관성에 따른 불가피한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리범위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문서화한다.

별첨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계약에 관한 특수조건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붙임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5 위약금 및 제재 부과기준

☐ 유형별 제재방침

구분	유형	처리방침	제재대상
장애처리 부실	장애발생시 장애조치완료까지 소요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여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때	위약금 부과	주관사업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주관사업자
		벌점 1점 부과 경위서 징구	담당자 및 PM
	평일 업무시간 이후와 공휴일 및 법정휴일에 장애발생시 담당자 혹은 대업이 가능한 자가 비상연락에 불응하거나 근무지 소집에 응하지 못하여 장애복구가 2시간 이내에 시작되지 못한 때	위약금 부과	주관사업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주관사업자
		벌점 1점 부과 경위서 징구	담당자 및 PM
인적 결함	담당자 과실(테스트 미흡, 업무태만 등)로 복구할 수 없는 데이터 손실 등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오류가 발생한 때	벌점 3점 부과 경위서 징구	담당자 및 PM
	담당자 과실(테스트 미흡, 업무태만 등)로 단순 데이터 오류 및 복구 가능한 데이터 손실 등이 발생한 때	벌점 1점 부과	담당자
	고의적으로 과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때	벌점 5점 부과 경위서 징구	담당자 및 PM
보안관리 부실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때	부정당업체 등록	주관사업자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주관사업자 및 위반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주관사업자
		퇴출	위반자
		경위서 징구	PM
	발주기관의 보안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주관사업자
		벌점 2점 부과	위반자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시 협조하지 않은 때	벌점 1점 부과	위반자
기타	발주기관 상주근무 중 내부방침에 협조하지 않은 때(흡연장소, 근태 등)	벌점 0.5점 부과	위반자

㉔ 제재조치 누적 시 처리방침

- 유형별 중복 위반 시 누적 제재조치
- 누적조치로 별점 10점 이상 부과 시 대상자 퇴출 및 인력교체

㉕ 위약금 정산 방법

- 사업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분)당 사업대가 × 1.5배

※ 시간당(분) 사업대가 금액 : 계약금액 × 1/계약기간(일) × 1/24(시간) × 1/60(분)

㉖ 제재조치 예외대상

- 천재지변에 의한 시스템 장애
- 발주기관 정보인프라의 전반적인 장애로 인한 시스템 장애
- 그 외의 불가항력에 의한 시스템 장애